성남창업센터(킨스타워) 입주기업 (추가)모집공고

‘창업하기 좋은 도시’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○○일
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 센터개요

【 킨스타워 】

< 성남창업센터(정글ON)/킨스타워 소개 >

창업이라는 “정글” 속에서 **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을 제시**하는 **창조적 커뮤니티 공간**,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**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**

구 분	개방형	독립형
	킨스타워19,21	**킨스타워20**
설립일	2017. 2월	2017. 12월
위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, 19층~21층 (킨스타워, 정자동) ※ 정자역 3,4번 출구 바로 앞	
면적 (전용)	1,045㎡(약 315평)	700㎡(약 210평)
공간구성 (보육규모)	· 입주공간 102석(4, 6인석) / 20개사 · 회의실 3개, 라운지, 강의장, 휴게공간	· 입주공간 13개 호실(6, 8, 10, 12인실) · 회의실 4개, 세미나실, 휴게공간
이용시간	**월 ~ 금(09시 ~ 21시)**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	**365일 24시간**
비고	**성남시 행정재산(킨스타워,19층~21층)에 위치한 센터로 중앙냉난방 공급 (평일 9시 ~ 18시)**	
센터전경	   	

2 모집개요

□ **모집대상** : (공고일 기준) 창업 7년 이내 (예비)창업기업

※ 독립형(킨스타워20/독립형)은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

□ **모집분야** :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※ 제조시설 입주불가

□ **모집규모** : 총 18개사 내외

센터명	개방형		독립형	
킨스타워	10개사	4인석	8개사	6인실 x 5개사 8인실 x 1개사 10인실 x 1개사 12인실 x 1개사

※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

※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

□ **모집기간** : ~ 2026. 11. 27(금), 17시 까지

※ 유의사항
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일 이전**에 **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. 마감시간 30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**신청자격**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예 비 창업자	▸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※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※ 킨스타워(독립형) 센터 공간은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」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▸**(공고일 기준) 창업 7년 이내 기업** -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 ▸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	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지 원 "제외"대상	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▸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(기업) ▸성남창업센터 이외에 **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센터 졸업 이력이 있는 기업** ※ 중기부 지침 (중기부 지정 BI센터 확인) https://www.smes.go.kr/binet/incu/center/list.do ▸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요건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입주기간</td><td>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년)
※ 입주 연장 평가 후, 평가 결과에 따라 1회(1년) 연장 가능
※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(정글ON) 입주 총량 최대 3년, 입주성과(투자, 고용 등)
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</td></tr>
<tr><td>입주비</td><td>
<table>
<tr><th>센터명</th><th colspan="2">입주관리비(보증금)</th><th colspan="2">멤버십비(사용료)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킨스타워</td><td>개방형</td><td>좌석당 20만원</td><td>개방형</td><td>좌석당 7만원/월</td></tr>
<tr><td>독립형</td><td>좌석당 30만원</td><td>독립형</td><td>좌석당 10만원/월</td></tr>
</table>
※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
※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1년치를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

• 예시1 (킨스타워 개방형/4인석)
- 입주관리비 : 20만원 × 4인 = 80만원 (이행보증보험)
- 멤버십비 : 7만원 × 4인 × 12개월 = 336만원

• 예시2 (킨스타워 독립형/12인실)
- 입주관리비 : 30만원 × 12인 = 360만원 (이행보증보험)
- 멤버십비 : 10만원 × 12인 × 12개월 = 1,440만원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○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
•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
• 행위제한 및 퇴소
• 센터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 등록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(좌석)의 근무인원 확보</td></tr>
</table>

4 선정절차 및 방법

□ 접수 및 선정절차

구 분	시 기	내 용
공 고	‘26. 11월 4주차	·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
접 수	공고일 ~ ‘26. 11. 27, 17시	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서류평가 일정	~ ‘26. 12월 초	· 이메일 결과 안내
발표평가 일정	‘26. 12월 중	· PT형식 발표평가 진행
최종 선정기업 안내	‘26. 12월 중	· 이메일 결과안내(선정,미선정)
상호대차 계약체결	‘26. 12월 중 *입주 ’27. 1월	·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

**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**

□ **서류평가**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
□ **발표평가**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
□ **평가기준**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타당성 등

□ **결과통보**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
□ **가점사항**

① **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(5점)** *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
② **TIPS,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**

-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(7점)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5점) * 보증·융자 제외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3점) * 보증·융자 제외

***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**

** **증빙**(인증 확인서, 선정 공문, 협약서, 투자계약서 등) **미제출시 미인정**

*** **서류평가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**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접수마감** : ~ 2026. 11. 27(금), 17:00 까지

□ **접수방법**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nip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▮ 하단 표의 “제출서류” 중 ① ~ ⑧ 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생성

▮ 파일명 = “기업명”으로 설정

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*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,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서류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	○	○	○	
②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	○	○	×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	○	×	×	
④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	○	○	×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×
⑦ 가점사항(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		○	○	×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○	○	○	

【 발급경로 안내 】

- **사업자등록증명원** : (홈택스) https://www.hometax.go.kr
- **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** : (인터넷등기소) http://www.iros.go.kr/
- **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**
  - 국 세 : (홈택스) https://www.hometax.go.kr
  - 지방세 : (정부24) https://www.gov.kr
- **4대 보험 가입자 명부**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https://www.4insure.or.kr
- **사실증명** : (홈택스) https://www.hometax.go.kr
  - 발급방법 :「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」-「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
  -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

□ 문 의 처 : 성남산업진흥원 인프라허브센터

구 분		담 당 자	연 락 처
킨스타워	개방형 독립형	이소영 주임	☎ 031-782-3274

【별첨】 창업여부 기준표

<table>
<tr><th>신청기업</th><th colspan="3">상세 구분</th><th>창업여부</th><th>해당기업명</th></tr>
<tr><td rowspan="8">개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</td><td>창업 기본요건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타인으로부터
상속/증여</td><td colspan="2">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존 개인사업자
유지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기존 개인사업자
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존 법인사업자
유지 또는 폐업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2">법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</td><td>창업 기본요건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기존 개인사업자
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동종전환</td><td>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</td><td>개인사업자의
창업자 지위승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존 개인사업자
유지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동종창업</td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
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
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회사 여부</td><td colspan="2">법인 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
총수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과점주주 여부</td><td colspan="2">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
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회사형태 변경</td><td colspan="2">동종유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3">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>

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